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. 8. 30 선고 2022가단1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3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10. 1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8. 10. 25. 접수 제17879호로 마친 각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인

별지